

[서식 예]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

상 속 재 산 포 기 심 판 청 구

청구인(상속인) 1.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000 - 0000

2.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)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000 - 0000

사건본인(사망자) $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(주민등록번호)$

사망일자 2000.0.0.

등록기준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최후주소 00시 00구 00길 00

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

청 구 취 지

청구인들의 망 △△△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△△△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○○. ○. ○.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,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	가족관계증명서(청구인들)	각 1통
1.	주민등록등본(청구인들)	각 1통
1.	인감증명서(청구인들)	각 1통
	(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(부모)의 인감증명서)	
1.	기본증명서(망인)	1통
	(2008. 1. 1.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)	
1.	가족관계증명서(망인)	1통
1.	주민등록말소자등본(망인)	1통
1.	가계도(직계비속이 아닌 경우)	1통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청 구 인 1. ○ ○ ○ (인감도장) 2. ○ ○ ○ (인감도장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

	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	는 가정법원				
	(상속개시지는 원칙적으로 망자의 최후					
 제출법원	주소지를 말함. 단, 주소를 알 수 없는 제출기간 ※ 아래(1)참			※ 아래(1)참조		
세물법전 	경우는 최후의 거소(居所)지를, 거소지 제물기간 ※ 아내(1			※ 약데(1)삼조 		
	를 알 수 없는 경우이	에는 사망지	를 상			
	속개시지로 봄 - 민법	제19조, 제2	20조)			
신 청 인	・상속인(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)	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법	법 제1019, 제1041조, 가사소송법		
에 흔기 기	26/11/		제23	조제1항라류, 제44조6호		
불복절차	불복절차 ·즉시항고(가사소송규칙 제27조)					
및 기간	・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(가사소송규칙 제31조)					
, J. O	·인지액 : ○○○원(□=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					
비 용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			
	피상속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함으					
기 타	로써 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음					

※ 제 척 기 간

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.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. 일반적으로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고 동거인이 아니었다면 사망신고가 된 날로부터는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따져야 함.

한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(민법제1026조제1호)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(신설 2002. 1. 14).